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6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자치단체 위임규제 관련 개선 요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삭제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 삭제(제5조제1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4. 6. 12. ~ 7. 2.)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 ---------- ---------- ---------- ----------. 〈삭 제〉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의안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조례 개정안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김 명(02-2133-2327)